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8일, 최보운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운 의원)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영역에 ‘재난 등 안전관리 상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다 실질적·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은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을 이

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재난이나 사고 시에도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이미 시설물 접근·이용 또는 비상시 대피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 또한 이러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둘째, 개정안 제19조의2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정 의무사항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에는 ‘맞춤형 통합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장애유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대응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등과 같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국무총리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장관 작성)에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음.

아울러,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년~2029년)에는 ‘전략 4.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중 2.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피해유형별 재난안전관리 대책’에서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인데,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적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및 입법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 보장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개정안 제19조의2는 삭제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
시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을 현행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통합
하여 반영하며, 시행일을 조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시설물 접근·이용과 비상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19조의2는 삭제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을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통합하여 반영하고, 시행일을 조정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의2 삭제, 부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비상시”를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로 한다.

안 제19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u>비상시</u>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 ----- -----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u>비상시</u>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		③ ----- ----- -----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u>

당한 편의의 제공
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신 설>

제19조의2(재난 등 안
전관리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① 누구
든지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

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치단체는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
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장애인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
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예
방, 안전관리에
관한 장애인 안
전관리 매뉴얼
작성

2.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
전장비 및 용품
의 안전점검 및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
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유형별 안전
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u>공포한 날</u>부터 시행한다.
--	--	----------------------------------

법률 제 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비상시”를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로 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u>비상시</u>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금지) ①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u>비상시</u>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